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원기간 연장등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간 연장>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6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입원기간 연장등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간 연장	2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1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Ⅱ. 검토 의견

1. 입원기간 연장등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간 연장

- 개정안은 입원기간 연장, 퇴원, 외래치료 지원 등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간에 대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생략) <u><신설></u>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 (생략)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 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 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현행법 제60조¹⁾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외래치료 지원 결정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재심사 청구 가능 사례>

재심사 청구 가능 사례	현행	개정안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기간 내 심사를 못 받은 경우 ²⁾	14일 이내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³⁾)	30일 이내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제2항 각 호)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결과 불복 ⁴⁾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결과 불복 ⁵⁾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 청구 가능 사례	현행	개정안
외래치료 지원 결정 심사결과 불복 ⁶⁾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 심사결과 불복 ⁷⁾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퇴원등 또는 입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4.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제2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거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8)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⁹⁾, 청구권자의 권리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8)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9)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재심사 청구 기간을 늘려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8